

공정위, 『공정거래법령 개정』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』 설치
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(토) 공정거래법 개정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학계, 기업 등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「공정거래법령 개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」를 설치했다.

동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는 지난 1998년 3월 27일 IBRD의 구조조정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IBRD측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쟁정책의 수립과 집행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시장의 효율성 제고방안이나 조사권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소비자보호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와 함께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.

동 민관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필요시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.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예정으로 있으며, 재정경제부 차관보, 법무부 법무실장, 산업자원부 차관보,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정부요원 4명과 학계, 법조계, 연구기관, 기업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 민간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,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휘갑 정책국장이 담당할 예정이다.

동 민관합동위원회의 의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집하고, 동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나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장에 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간사는 IBRD가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실무안을 마련하여 토의안건으로 제출한다. 동 위원회는 간사가 제출한 토의안건을 심의하여 공정거래법령 등 개정 권고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며, 공정위는 동 권고안을 기초로 공정거래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.

동 민관합동위원회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

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, 공공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,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고,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. 이밖에도 공정거래법 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를 공정거래법령 등 개정 권고안에 포함시키게 된다.

민관합동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 등의 개정 권고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제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, 1998년 4월 하순에 제1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, 오는 1998년 7월 31일까지 동 위원회 차원의 공정거래법령 개정 권고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〈민관합동위원회 위원 명단〉

구 분	성 명	현 직책	
정 부 (4명)		재정경제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공정위 사무처장	
민 간 (11명)	학 계 (4명)	서현제 이은영	중앙대 법대 학장 외대 법대 교수 (소비자보호원 비상임이사)
		최정표 장승화	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
	연구기관 (2명)	신광식 유승민	KDI 연구위원 KDI 연구위원
		기 업 (2명)	이주선 최동규
	소비자단체 (1명)		송보경
	법 조 계 (2명)	윤호일 윤세리	변호사 변호사